

대학평의회 회의록(2020학년도 제9차)

구 분	인 원
정수	11인
재적	11인
참석	9인

1.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14:00

2. 장 소: 믿음관 3층 세미나4실

3. 출·결 사항

◦ 참석 평의원(9인)

- 류재경, 이정규, 임원선, 홍수희, 이대성, 노준영, 박용진, 이석재, 이민영

◦ 불참 평의원(2인)

- 김현호, 김봉건

◦ 간사 (1인)

- 기획팀장 이영기

◦ 배석자 (2인)

- 대학평의원 담당자 기획팀 하정완, 기획팀 송동훈

4. 안 건

가.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심의

나.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 자문

5. 회의 내용

[주요 내용(요지) 및 심의사항]

가.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심의에 관해 이영기 기획팀 팀장 설명

- <별첨1. 회의자료>

1) 관련근거

간서명	이영기	이영기	노준영
-----	-----	-----	-----

입안서

1. 제규정명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2. 부 서 명 : 기획처 기획팀

3. (제정·개정)이유

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학사(조교)직 평의원 추가

나. 학생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한 학생 평의원 증원

다. 회의록 공개 일정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라. 평의원 신분 변화에 따른 평의원 자격 상실 규정 신설

4. 주요내용

가. 제4조(구성)

나. 제5조(평의원의 자격)

다. 제6조(평의원의 위촉)

라. 제8조의2(회의록)

마. 부칙에 관한 사항

간서명	이	0/	노준영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에 따라 <u>신한대학교</u>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비에 수정 따른
제1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학 평의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3.]	제1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학 평의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u>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u> (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3.]	* 문구 비에 수정 따른
제2조(명칭) 이 대학평의위원회는 신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설치) <u>신한대학교</u>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u>대학평의위원회</u> (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문구 비에 수정 따른
제3조(기능)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학현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평의위원회 기능)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학현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문구 비에 수정 따른

간서명	김민수	이민수	조국영
-----	-----	-----	-----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4조(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 평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평의위원회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성단위별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평의원 13명으로 구성한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사(조교)직 1명 4. 학생 2명 5. 동문 1명 6.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위원회는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문구 정 비에 따른 수정 * 고등교 육법 제19 조의 2에 의한 정비 * 구성원 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을 위한 학사(조교) 직 평의원 추가 * 학생의 견해를 반영 확대할 위 한 학생 평의원 증

간서명	이민	0/1206	노준영
-----	----	--------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조(평의원의 자격)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에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④ 동문 및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5조(평의원 자격) ① 제4조의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2. 직원 :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3. 학사(조교)직 : 대학 학사(조교)직으로 재직중인 자 4. 학생 : 대학 재학생 중에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동문 및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 ② 제1항의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및 직원 가.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경우 다. 3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하거나 연구년 교원이 된 경우 2. 학사(조교)직 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경우 3. 학생 가. 휴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나.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 교환학생 파견, 현장실습 수업 참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내에서 학업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문구정비에 따른 수정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한 정비 * 평의원 신분변화에 따른 자 상실 규정 신설

간서명	이민	오/김민	노준영
-----	----	------	-----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6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되 다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제6조(평의원 추천절차)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평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원 : 교수회의 추천 2. 직원 : 직원회의 추천 3. 학사(조교)직 : 학사(조교)직회의 추천 4. 학생 : 대학 총학생회 추천 1명,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 1명(다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회(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 5. 동문 : 총동문회에서 추천 ② 그 밖의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외부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 문구 비에 수정 다른 * 고 등 교 육 법 제 19 조 의 2 에 의 한 정 비
제7조(평의원회 의장 및 임기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총장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구성단위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평의원회 의장은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구성단위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평의원회 의장 및 임기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각각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구성단위에 평의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구성단위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평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구성단위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문구 비에 수정 다른

간서명	이	2012	0/12/26	노준영
-----	---	------	---------	-----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의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삭제 <2018.11.13.>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의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삭제 <2018.11.13.>	* 문구정비 에 따른 수 정
제8조의2(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총장은 대학운영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회의결과의 제출을 평의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제8조의2(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평의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총장은 대학운영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회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평의원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 문구정비 에 따른 수 정 * 회의록 공개일 확대 통정 명 확 보

간서명	이원수	오/원복	노준영
-----	-----	------	-----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평의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심의·의결한다. ②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평의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심의·의결한다. ② 의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u>심의·의결</u>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문구정비에 * 다른 수 * 정
제11조(평의원의 의무) ① 평의원 및 관련 교직원이 <u>평의위원회</u> 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의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u>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u>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평의원은 평의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평의원의 의무) ① 평의원 및 관련 교직원 <u>은 평의위원회 운영</u> 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의원은 <u>대학과</u>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u>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u> 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평의원은 평의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문구정비에 * 다른 수 * 정
제12조(재정) ① 총장은 평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의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① 총장은 평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의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문구정비에 * 다른 수 * 정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위원회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평의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 <u>은</u> 평의위원회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평의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u>개정</u> 할 수 있다.	* 문구정비에 * 다른 수 * 정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사립학교법</u> 및 <u>법인정관을 준용</u> 하되, <u>이외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사립학교법령 및 정관에 따르며, 이 규정 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문구정비에 * 다른 수 * 정
	부 칙 <2021.01.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의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 <u>에 따라 최초 평의원이 되는 학사(조교)직 1명과 학생 1명에 대한 평의원 임기 만료일은 종전 평의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은 것으로 본다.</u>	* 부칙 추가

간서명	의 씨	이 씨	이 씨
-----	-----	-----	-----

나.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 자문에 관해 송동훈 기획팀 팀원 설명

- <별첨1. 회의자료>

☐ 관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 기획팀 2020-1037(2020.12.31.)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 계획 및 설명회 개최”

☐ 예산편성 기본방침

☐ 코로나19의 지속·확산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2021회계연도 운영예산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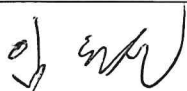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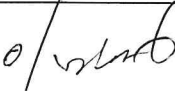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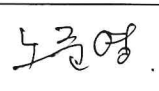
- ▶ 2020회계연도 추정기준 등록금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할당제” 적용
- ▶ 부서별 전년도 예산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할당
- ▶ 고정비 구분 계정과목 목록

교내장학금	교원급여	교원법정부담금	교원상여금	교원제수당	교원퇴직금
기계기구매입비 (교육용 기자재)	난방비	노임	도서구입비	리스/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시간강의료	시설용역비	실험실습비 (교육용 소모품)	임시직인건비
장비관리비	전기/수도료	제세/공과금	직원퇴직금	직원급여	직원법정부담금
직원상여금	직원제수당	차량유지비	통신비	잡손실 (등록금 반환 및 국가정확금 반환 등의 사유)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휴학 및 제적 증가 등 수입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 ▶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라 고정비를 우선 배정하여 운영은 가능하되 일반사업비 축소 조치
- ▶ 비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관련 사업 및 예산 조정

☐ 비대면(Untact)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대면 방법으로써 발생되었던 불필요한 예산 절감

간서명			
-----	---	---	---

☐ 대학 재정 수입분야 확대 필요

- ▶ 재학생충원을 제고(중도탈락 방지), 기부금 유치, 부가 수익사업 활성화 필요
- ▶ 정원의 재학생 감소(외국인유학생, 평생교육원 등)로 인하여 수입 감소 대안 마련
- ▶ 국고 및 지자체 등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및 수혜 확대를 위한 노력 강구

☐ 필요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운용 가능

단계	긴축운용방향
1단계	- 고정비 ^{*1} 를 제외한 편성예산의 40% 긴축 적용
2단계	- 고정비를 제외한 편성예산의 50% 긴축 적용
3단계	- 신규예산 편성 및 예산전용 불가 -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중 일반성 경비^{*2} 전면 통제
*1 ▶ 고정비: 장학금, 보수(인건비), 시설관리비(유지보수), 법정의무비용 등	
*2 ▶ 일반성 경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행사비, 집기비품, 기타운영비 등	

☐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및 낭비 제거

☐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 자금예산 규모

○ 교비회계의 수입·지출 총액은 각각 : 771.7억원

○ 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577.0억원

○ 비등록금회계 수입·지출 : 210.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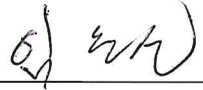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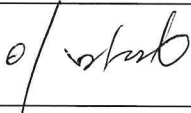
※ 내부거래 :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4억원

6. 평의원 심의 및 자문 주요 내용

- 회의 안건 세부 내용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심의

- 류재경 의 장: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재 평의원: 학사(조교)직은 계약직인데 평의원으로 임명이나 위촉이 가능한지요?

간서명			
-----	---	---	---

◦ 기획팀 이영기 팀장: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대학평의위원회 부분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 자문

◦ 류재경 의 장: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경 의 장:
이대성 평의원

수입 대비 지출 비율과 부서 할당예산에 대하여 묻다.

◦ 기획팀 송동훈 팀원:

예산할당제를 시행함에 따라, 고정비를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고정비는 약 564억 규모이며, 전년도 등록금수입을 580억 규모임에 따라 수입 대비 지출의 경우 10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580억의 수입을 기준으로 564억의 고정비를 제외한 약 16억 규모에 대하여 일반사업비로써 부서에 예산을 할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기대한 수입에 미달될 경우, 2021회계연도에도 긴급재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정규 평의원

수입에 있어 학생들의 등록과 휴학 등 이외에도 편입학 등이 반영되었는지 묻다.

◦ 기획팀 송동훈 팀원:

편입학의 경우 제적생에 대한 여석의 규모로 선발하는 제도로써, 편입학 여석 만큼 학생 이탈이 있다는 것으로써, 편입학과 학생이탈이 모두 반영되어 등록금 수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장 류재경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음으로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평의원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7. 참석 평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인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및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서명			
-----	---	---	---

8. 위 사항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답변 등을 통하여, 제1호 안전인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및 2021회계연도 본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3인(임원선 평의원, 이민영 평의원, 노준영 평의원)선발하여 간서명 실시하기로 의결함.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위와 같이 심의 및 자문하였음을 확인함.

2021. 1. 28.(목)

의 장	류재경	류재경
부의장	이대성	이대성
평의원	이정규	이정규
평의원	임원선	임원선
평의원	홍수희	홍수희
평의원	김봉건	
평의원	이민영	이민영
평의원	노준영	노준영
평의원	이석재	이석재
평의원	박용진	박용진
평의원	김현호	

간서명	임원선	이민영	노준영
-----	-----	-----	-----